

提案制度의 由來와 運用

〈Ⅱ〉

— 美國 등 先進國의 職務發明制度를 中心으로 —

3. 유럽의 動向

유럽에서는 美國보다 조금 늦게 London Traction Combine會社와 Royal Austro-Hungarian鐵道會社 및 스위스 철도회사 등 運輸會社가 提案制度를 採擇하여 차츰 國際의 色彩를 띠기 시작했다.

1941年 獨逸의 Karl Zeiss 光學會社에서 이 제도를 채용하기 시작했고 1929년에는 獨逸의 國有鐵道에서 實施한 사실이 있다. 이 국 유철도는 1년 동안에 506명의 提案者에 대하여 總額 13만 9,150 마르크를 支給했으며 이는 1人當 平均 275 마르크에 해당하나 그때의 貨幣價値로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특히 독일은 2次大戰이 일어나자 被傭者의 發明意識을 昂揚, 保護하고자 1942年 7월 12일에 4個年計劃委員會가 「被傭者 發明 取扱에 관한 命令」을 制定 公布했다. 더우기 軍需大臣은 관계 각대신과 협의하여 그 명령의 施行과 補償에 필요한 法制의 제정공포 權限을 委囑받고 1943年 9월 2일에 同施行 令을 공포하였다.

이어 1944年 10월 10일에는 피용자반명의 補償細則을 공포했다. 그러나 1942년의 명령은 戰後 1952년에 「피용자 및 公務員의 反명에 관한 草案」이 議會에 提出되었으나 迂餘 曲折끝에 1957年 7월 25일에야 「피용자 反명에 관한 法律」로써 채택되어 그 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4. 蘇聯의 制度와 그沿革

소련이 제안제도를 國家的인 운동으로 展開하게 된 것은 1919年 6월 30일에 제정된 特許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특허법에는 私有財産을 社會公共의 이익을 위하여 收用한다는 原則이 表現되어 同法 第1條에 有用한 發明은 소비에트共和 國聯邦最高經濟會議의 명령에 따라 이의 수용을 宣告할 수가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더우기 發明者에 대한 補償金, 證明書의 交付, 發明의 公開 등도 정해졌다.

소련은 1920년경에는 農産物은 革命전 보다 절반도 되지 않았고 工業生産도 1913年에 比하여 13.8%에 지나지 않는 비참한 처지에 몰리게 되어 農産物의 徵發制度는 廢止하고 아울러 工業製品의 生産政策을 根本的으로 뒤집어 極端的 集權體制로 移行했다.

정책을 變革한 뒤에 國民의 創意性과 生産 意欲을 提高하려고 꾀한 것이 1920년경부터 歐美各國의 本을 따서 各組織의 皮用者에게 제안제도를 채용했다.

그 후 1921年 3월 12일의 共產黨 第10次大會에서 채택된 이른바 新經濟政策이 實施되고 1924年 9월 12일에는 특허법을 改正하였으나 이 제도는 당시의 獨逸制度和 비슷했다. 1927년에는 共產主義의 工業化政策이 強化되었으나 國際社會에서 孤立되어 부득이 農業國에서 工業國으로의 轉化가 不可避했고 따라서 國民의 勞動生産性의 提高를 強要하게 되었다.

1927年 12월의 15次共產黨大會는 1次 5個年計劃(1928~32年)을 마련하고 모든 경제 계획을 새기술개발에 主眼을 두어 1931年 4월 5일에는 새 특허법이 공포되었다. 그 후 1959年 4월 24일에 現行 特許法을 제정하였으나 1931年 제정된 法에는 比較的 제안제도에 대하여 能動性이 賦與되어 있었다.

5. 日本의 경우

日本은 1950년 1월 13일자로 日本學術會議가 科學技術行政協議會(會長: 吉田茂) 앞으로 「公務員의 발명취급에 관한 件」을 내놓고 국가공무원의 발명에 대해 統一的인 취급이 그 해인 1950會計年度부터 실시되도록 勸告했다.

그 내용은 국가공무원이 발명을 했을 때는 發明者가 外部에 발표하기에 앞서 届出義務, 任務發明의 경우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특허권리의 讓渡, 登錄補償金, 實施補償金の 지급, 특허권의 管理處分方法 등에 관한 것들이 담겨 있었다.

이 권고가 나오게 된 動機는 美國制度를 감안한 맥아더司令部的 영향력이 作用한 것이며 이에 따라 통산성산하 工業技術廳(現 工業技術院)은 1952년 1월 29일자로 廳令 134號로서 「工業技術廳勤務發明規程」을 제정하여 그 해 2월 1일부터 시행했다.

내용인즉 工技廳 職員의 발명가운데 勤務에 關聯해서 이룩된 발명을 「勤務發明」이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내용이 발명자의 任務

에 속하는 경우에는 「任務發明」이라 했으며 임무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各個人이 出願할 수가 있게끔 했다.

그러나 국가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工技廳長官은 豫算範圍안에서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되 補償率등은 廳內에 設置된 勤務發明審査會의 자문을 거치게 되어 있었다.

보상금은 국가가 承繼登錄했을 때는 우선 특허권은 1件에 1,000圓以下, 實用新案權과 意匠權은 500圓이하를 지불하고 승계된 특허권 등의 運用 또는 處分에 따른 수입이 있는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불한다.

① 국가가 그 특허권의 실시허락으로 실시로 수입이 있을때는 그 수입의 30% 이하의 金額

② 특허권을 賣却했을 때는 그 代金の 30%이하

이와 같은 방법 외에 長官이 별도로 보상금을 策定할 수도 있었다. 그 당시의 예산총액은 811,000圓이었다. <계속> <C記>

<5 면에서 계속>

4. 情報産業과 企業

정보산업 개념 중 기업과 관련된 컴퓨터의 활용과 기업단위의 시스템개발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첫째, 現代企業에 있어서 컴퓨터의 이용은 상식화되고 있다. 선진 제국의 기업이나 국내 타 기업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기업경영形態가 대형 다양화하고 있어 정보처리의 신속을 요하는 복잡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必要性이 절실히 要講되는 까닭에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극히 단편적이며 평범한 예시이거나와 각 기업의 특색에 따라 보다 빨리 보다 새로운 차원의 업무개발로 企業 利潤을 增大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의 積極的인 컴퓨터활용은 타의에 의한 承服의 전지이거나 自意에 의한

進一步의 전지에서이거나 그 필요성이 急激히 인식 되고 있으나 기실 그 活用に 있어서 는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의 充足과 충분한 효과를 위한 노력에는 무관심 한 경우가 허다하다.

컴퓨터는 그 이용능력에 따라서 評價가치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현재 컴퓨터를 운용하고 있는 企業에서도 인사, 생산, 재고, 판매 관리 등 人力作業으로 가능한 業務를 기계화 하는 것에 만족 할 것이 아니라 分析, 豫測, 計劃업무 등과 더불어 經營情報시스템(MIS)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충분히 활용 될 수 있도록 처리요원의 능력을 배가 시키고 企業經營者의 관심을 집중시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도입한 컴퓨터가 제 구실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도입 후에는 범기업적으로 전산화 지향적체제 확립과 최고 경영자의 절대적인 관심 및 부단한 노력으로 그 효용가치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